

『 구(舊)신길7동 청사 무상 사용허가 동의(안) 』  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구(舊) 신길7동 청사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**제안사유**

- 사무실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구(舊) 신길7동 청사를 한시적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함.

**주요내용**

- 대상건물 : 구(舊) 신길7동 청사
- 소 재 지 : 영등포구 신길동 869
- 규 모 : 대지617.4㎡, 건물561.71㎡
- 사용목적 : 사무실 및 주차장
- 사용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

##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수익허가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기업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6. 22

보고자 : 김 찬 재

#붙임 : 관련법규.

# 관 련 법 규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### ○ 제20조(사용·수익 허가)

- ①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,
  - 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수익계약(수익계약)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.
    -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
(동법 시행령 제13조제②항제1호)

### ○ 제24조(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,
  - 4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### 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

- 3. 『지방공기업법』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